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8명(5급 2명, 6급 6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. ~ 8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43”을 각각 “44”로 한다.

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
“2025년 8월 31일”을 “2027년 8월 31일”로, “2025년 9월 1일”을 “2027년
9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8명(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 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 2명, 행정주사 · 공업 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또 는 시설주사 6명)은 <u>2025년 8월</u> <u>31일까지</u> 존속하며, <u>2025년 9월</u> <u>1일</u>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 · 공업 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또 는 시설주사 2명, 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환경 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.	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8월</u> <u>31일</u>----- <u>2027년 9월</u> <u>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0의4]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5항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.		.	.	
			<u>43</u>	<u>44</u>	+1
일반직 계			<u>43</u>	<u>44</u>	+1
	.		.	.	
	.		.	.	